

# 의안 검토 보고

의안 번호	제116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1999.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재근		

## 1. 검토내용

### 가. 제안이유

- 날로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동에 배치할 일반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증원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현행정원 1,224명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전문요원 1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40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함.(안 부칙 제2조)

#### 「표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1,3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9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표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1,28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61명 22명

○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 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 까지 정함.(안 부칙 제4조)

## 다. 참고사항

- 관계규정 :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시달 (행정자치부 자체12200-616('99.10. 1) 및 서울시 조직 12200-79('99.10. 5)호와 관련
- 예산조치 : 국비 50%지원 및 지방비 50% 2000년 예산편성
- 합 의 : 필요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기 타 : 없음

## 2. 검토결과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998.10. 2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이후 2차에 걸쳐 조례를 개정, 정원을 조정한 바 있으나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시달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정원의 총수를 1,240명으로 16명을 증원하며,
  1. 집행기관의 정원을 1,202명에서 1,218명으로 16명 증원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대로 함.(안 제2조)
- 정원에 관한 적용에 있어서 2000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03명에서 16명 증원된 1,319명으로 하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의 총수를 1,267명에서 1,283명으로 16명 증원된 1,283명으로 함.(안 부칙 제2조)
-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2조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종전 “매년 7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정하도록 함.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등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직으로 전환 및 증원을 위하여 신규채용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지침이 시달(자제12200-616 '99.10. 1)되었고,
- 지방행정조직운영지침(행정자치부 자제12200-560, '99. 9.11)이 시달되었으며,
- 2000년 예산안에 인건비가 반영되었기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자료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3조, 제21조

# < 관계 법령 >

## [ 지방자치법 ]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3·16>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化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公務員의 任用과 試驗·資格·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教育訓練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5·16, 98·8·31>

1. 집행기관의 정원(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97·2·4>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5·5·16>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5·16>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그 출장소